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기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9. 9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2. 9. 14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1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2. 9.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유용현)

가. 제안 이유

의료보호법(91.3.8 법률 제4353호 전문 개정)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91.9.6 대통령령 제13461호), 시행규칙(91.10.10 보건사회부령 제883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법령과 상치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 골자

0. 제1조(목적)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함.
0. 기금관리공무원(제4조)
0. 대불금의 상환(제8조)
0. 결손 처분(제9조)
 -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부상)

0.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19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91년 12월 23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 부결됨에 따라 지난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0.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 첫째, 개정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의료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규인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조목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며,
- 둘째, 제4조의 기금관리공무원에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21조로 조목이 개정되면서 상위법규인 시행령과 조례 4조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로써 변경되는 것이며,
- 세째,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에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가 25조로 개정되면서 대불금액이 일부 조정됨으로 변경되며,
- 네째, 제9조 결손 처분에서 의료보호법 제12조가 제18조로 개정되면서 결손 처분시 의회 승인에서 남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결정할 수 있다고 조정되었습니다.

0.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91년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조례 개정안과의 당위성을 검토해보면, 먼저 헌법 제1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도 조례는 법령 및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92년 9월 21일 현재 당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 조례는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1조 목적 및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 제8조 대불금의 상환, 제9조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등은 사실 개정된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 규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기본법인 법률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0. 이상의 4가지 개정 항목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부득이 본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이므로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을 벌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의미 또한 깊으므로 구청에서는 본조례를 운용할 시 주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최진동 위원	사회과장 유용현	·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에 대해서 설명 요망	· 위원 위촉사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며 위원은 사회과장, 이문화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원재식 내과의원 원장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김한민 위원	"	·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설명 요망	· 의료보호법과 시행령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
손원익 위원	"	· 본조례 제9조 제4호에서 의료보호법 제10조 2항과 제16조 2항에 대한 설명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예산 운영에 어긋 나는 것인지 설명 요망	· 결손처분과 관련된 것은 신구법령 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모법 인 의료보호법에 근거하 하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결손처분등 조례를 제정 하게 된 것임.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